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583

제출년월일 : 2014 . 11. 2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신고기간 등) 변경(안 제16조)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기간
  · 사업개시일 10일전 →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상위법에 관련 규정 신설로 [별표2] 및 [별지 서식] 삭제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새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방침결재문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다량배출사업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하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를 "이에"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를 "시행령"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하며, “사업개시일 10일전”을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이내”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하고, “위탁10일전까지”를 “신고서에 붙여서”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으로 하며, “1월말”을 “2월말”로 한다.

제16조제5호 중 “30일”을 “1개월”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하며,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2와”를 “시행령 별표 8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청소행정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청소행정과장 최 관
	계장·팀장 직위·성명	재활용계장 김 정 아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문 준 (행정 3541)

[별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0조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규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생 략)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16조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나. (생략) 4. ~ 6. (생 략)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8조의 4---------- 나.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② (생 략)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④ (생략)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 라 한다)----------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이에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음식물 폐기물용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여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별표1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규격봉투 또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되 생활폐기물 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① ----------별표----------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행령 ---------- 폐기물처리신고자----------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 략)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13조,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위탁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지급과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이내---------- 2. ---------- 발생억제 및 이행계획----------신고서에 붙여서---------- 3.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4.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2월말----------

현 행	개 정 안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5. ---------- 1개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사항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생략)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1.----------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2.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생략)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시행령 별표8과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0조관련)

종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규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개 정 안

[별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0조관련)

종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규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현 행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개 정 안

[별표 2] 삭 제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 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⑥ 사업장규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 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 방법	⑫ 처리 능력	⑬ 설치 신고 일자	⑭ 처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 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⑱ 자가 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⑲ 위탁 재활용 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 량	위탁 계약 비용	위탁 업 소 명	업 종	재 활 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앞면)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뒤면)	[별지 제1호 서식] (뒤면) 삭제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삭 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 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 행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신출고자인	상 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 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삭 제